

연명 의료 결정에 대한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1. 개요

나의 삶 마무리는 내가 결정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일이 있으시지요?

2. 목적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를 남겨 놓을 수 있는 제도를 연명의료결정제도라고 합니다.

연명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 환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작성시 유의사항

- 1) 작성자 본인이 확인합니다.
- 2) 등록 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 3)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4) 사전 작성해도 사후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할 수있습니다.
- 5) 본인이 직접작성하지 않은 경우, 자발적이지 않은 경우,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작성한 경우 등은 효력이 없습니다.

4. 작성 가능 기관

반드시 등록된 기관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 기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등

5. 작성 방법

신분증, 상담사 설명, 서명 등

6. 기타

구체적 내용 방문 상담 등

2026. 01.05

은방울재가방문복지센터 김문혜 드림

보호자님!

안녕하세요?

요양제공 시 약관 및 급여 지침에서 상세히 말씀 드렸지만 다시 한번 첨부와 같이
요양보호사 인권침해 지침 및 급여제공범위 그리고 상호협력 동의 등을
보내드립니다.

참고하셔 좋은 요양이 유지될 수 있기 바랍니다.

첨부

1. 요양보호사 인권침해 지침 및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안내
2.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 보호자 상호협력 동의에 대한 안내

2026. 01.05

은방울재가방문복지센터 김문혜 드림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

※ 이 동의서는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 인격 존중과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원활한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I.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1.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 ①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의 하에 서비스 제공 계약서의 범위 안에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③ 이용자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제공인력에게 서비스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서비스 제공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 ① 서비스 제공은 **이용자 본인에 대한 서비스에 한정**하며 별도의 계약 없이 서비스 이용자가 아닌 **가족, 동거인을 위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② 이용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인력에게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 ③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과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행동 (꺼안기, 신체부위 접촉, 음란한 농담, 외설적인 사진·영상물을 보여주는 행위, 노출 등)은 삼가야 합니다. 만약 부적절한 행위 등이 있을 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④ 귀중품은 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II. 서비스 제공자 및 제공기관의 권리와 의무

1. 서비스 제공자 및 제공기관의 권리

- ① 서비스 제공은 이용자 본인에 대한 급여에 한정하며, 별도의 계약 없이 서비스 이용자가 아닌 가족이나 동거인에 대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② 서비스 제공자 및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를無理하게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③ 서비스 **제공자는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서비스 제공자 및 제공기관의 의무

- 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이용자가 직면한 상황과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바람직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② 서비스 제공자 및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서비스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은방울재가 방문복지세터에 알려야 합니다.

3.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는 상호 호칭을 부를 때 **이용자를 어르신 및 제공자를 요양보호사님 또는 요양선생님**으로 호칭하는 것을 권장한다.

2026 년 01 월 05 일

요양보호사의 인권침해 및 급여제공범위

■ 여러분을 정성껏 돌봐드리는 '요양보호사'란?

☞ 요양업무에 대한 소정의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인력입니다.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수급자 어르신의 건강과 안녕,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직원 인권 침해는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이 있을 받지 않고, 급여범위에서 일하며 그 외의 경우 센터에 무리한 요구시 그 내용을 센터에 전달하고, 지침을 받아 대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규칙에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장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구분	내용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예를 들면 명절음식·제사음식을 준비하거나 김장하기 등)
- ②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농사일, 영업행위 등)
- ③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예를 들면 대형유리창을 닦는 행위 등)

■ 구체적인 업무범위 및 예시(방문요양)

구분	종류	내용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세면 도움	얼굴·목·손 씻기기, 세면장소까지의 이동보조, 세면동작 지도, 세면 지켜보기
	구강 관리	양치질, 양치질 지켜보기, 가글, 틀니 손질, 필요한 물품 준비 및 정리
	머리 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 보조, 머리 감기기, 말리기, 필요한 물품 준비 및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정리
	옷 갈아입히기	의복(양말, 신발 포함) 준비, 갈아입히기, 지켜보기, 의복 정리
	목욕 도움	입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씻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기계 조작, 욕실 정리
	식사 도움	아침·점심·저녁 및 간식 준비 및 정리, 식사 도움, 지켜보기, 경관영양실시
	체위 변경	자세 변경, 일어나 앉을 경우 도움
	이동 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 지켜보기, 산책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관절구축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움, 보행 연습, 서있기 연습, 보조기구 사용 운동 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지켜보기 포함)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화장실이용 도움	이동 보조, 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처리, 필요물품 준비 및 정리
	취사	식재료 구매(장보기), 조리방법 선택, 식품·식기·주방 위생관리
	청소 및 주변정돈	대상자가 사용하는 침구 준비 및 정리·교환, 병실(방) 환기 및 청소, 채광, 방음, 전등과 TV 켜고 끄기, 세면대 소독, 쓰레기 버리기, 의복 정리정돈 및 수선, 보조기구 관리
개인활동 지원서비스	세탁	세탁물 분류, 세탁물 빨기·삶기·널기·개기기·다리기, 정리정돈
	외출 시 동행	은행·관공서·병원 등을 방문하거나 산책 시 부축 및 동행(차량이용 포함)
정서지원 서비스	일상업무 대행	물품 구매, 약 타기, 은행·관공서업무 대행
	말벗, 격려, 위로	대상자의 심리적·신체적 요구에 따른 가벼운 구두응대 및 정서적 지지
	생활상담	신체 및 가사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의 상담
	의사소통도움	책임기, 편지 대필, 구두 의사전달, 콜벨 대처 등